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3
제 1 조 [목적]	3
제 2 조 [명칭 및 소개]	3
제 3 조 [신의성실의 의무]	3
제 4 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3
제 5 조 [사용자의 의무]	3
제2장 협의회의 구성	3
제 6 조 [협의회의 구성]	3
제 7 조 [의장]	3
제 8 조 [간사]	3
제 9 조 [위원의 임기]	4
제 10 조 [위원의 신분]	4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및 의무	4
제 11 조 [사용자위원 선출]	4
제 12 조 [근로자위원 선출]	4
제 13 조 [사용자·근로자위원 의무]	4
제4장 협의회의 운영	4
제 14 조 [협의회 회의]	4
제 15 조 [회의소집]	4
제 16 조 [정족수]	4
제 17 조 [회의의 공개]	5
제 18 조 [비밀유지]	5
제 19 조 [회의록 비치]	5
제5장 협의회의 임무	5
제 20 조 [협의사항]	5
제 21 조 [의결사항]	5
제 22 조 [보고사항]	6
제 23 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6
제 24 조 [의결사항의 이행]	6
제 25 조 [임의중재]	6

제6장 고충처리	6
제26조 [고충처리위원회]	6
제27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6
제28조 [고충의 처리]	6
제29조 [상담실운영]	7
제30조 [대장비치]	7
제7장 보 칙	7
제31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7
제32조 [신고의무사항]	7
제33조 [운영세칙]	7
제34조 [규정 외의 사항]	7
제8장 부 칙	7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 의장으로 한다.
-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② 사용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사용자·근로자위원 선출 및 의무

제11조(사용자위원 선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할만한 책임자를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임한다.

제12조(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할만한 책임자를 근로자 중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제13조(사용자·근로자위원 의무)

선임된 사용자·근로자 위원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협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장 협의회 운영

제14조(협의회 회의)

- ①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첫째 주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협의회 공동의장의 결정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회의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회의소집)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9조(회의록 비치)

-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0조(협의사항)

-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사항)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사항)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제23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 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 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관리부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3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8장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 1 호】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 위원 명단

【별지서식 제 2 호】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서식 제 3 호】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서식 제 4 호】 고충처리 면담서

【별지서식 제 1 호】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 위원 명단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 위원 명단

사 용 자			근 로 자		
직 책	성 명	날 인	직 책	성 명	날 인

사 용 자			근 로 자		
직 책	성 명	날 인	직 책	성 명	날 인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 위원

년 월 일

【별지서식 제 2 호】 노사협의회 회의록

제 차 (정기 · 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보 고 사 항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참석 위원 서명	사 용 자		근 로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간 사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호	접 일 수 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자	위 원 인
		성 명	소 속 부 서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면담서	
상 담 일 자	
소속 및 성명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일 자	
상 담 위 원 : (인)	